##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28

발의연월일: 2021. 11. 4.

발 의 자: 박대수 · 박성민 · 김용판

이종배 · 김선교 · 김정재

이주환 · 이종성 · 지성호

안병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예정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그러나 아직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경유 차량이며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법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법의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5년 4월 3일 로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법률 제 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4월 3일"을 "2025년 4월 3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제1조(시행일)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 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 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 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 5년 4월 3일----. 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